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8.

발 의 자 : 윤재옥 · 김태호 · 김상훈
김선교 · 조지연 · 이인선
최은석 · 서천호 · 권성동
백종헌 · 엄태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등의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민의 미디어 이용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환된 상황에 맞추어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익사업의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에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보상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,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“일간신문”을 “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상계획의 공고 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,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·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,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.	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일간신 <u>문과 인터넷 홈페이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